

의안번호	2759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세종특별자치시장
제출 연월일	2021. 5. 28.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5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5. 28.

제 출 자 : 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제안이유

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함(안 별표 3 ① 및 ②)
- 나.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에 대한 권한을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도록 함(안 별표 3 ③)
- 다.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도,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수 등 유지·관리 사무를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수 등 유지·관리 사무를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(안 별표 3 ③ 및 ④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(붙임 1)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: 2021. 5. 20. ~ 2021. 5. 24.(4일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2)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: 2021. 5. 20. ~ 2021. 5. 24.(4일)

나) 협의결과

- 규제심사 결과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, 규제개혁법무담당관-5342(2021.5.21.)

- 부패영향분석 평가: 원안동의, 규제개혁법무담당관-5343(2021.5.21.)

- 성별영향분석 평가: 원안동의, 여성가족과-9325(2021.5.21.)

3) 비용추계 현황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 2)

4)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: 해당 없음

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, 규제개혁법무담당관-5610(2021.5.28.)

6) 관계 중앙부처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㉠ 중 재무분야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	시세와 관련된 대장 정리 및 수시분 부과 사무 중 다음 사무	
	가. 주민세 - 개인분 비과세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- 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사전조사 대장 정비 및 신고 관련 업무	지방세법 제7장
	나. 재산세 - 주택, 건축물, 시설물, 토지실측 현지조사 및 대장 입력 - 변동자료 정리 및 대장 입력 - 수시 부과분 입력 - 주된 상속자 지정(다만, 해당 읍·면 부동산에 한정한다)	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
	다. 지방소득세 -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	지방세법 제8장
	라. 해당 읍·면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	

별표 3 ㉠ 중 건설도시란의 제16호의 사무명란과 근거법규란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란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	시도,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제설 작업 협조·지원	도로법 제23조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별표 3 ㉠ 중 민원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	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
	가.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	
	나. 변경·해제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	

별표 3 ② 중 재무분야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	시세와 관련된 대장 정리 및 수시분 부과 사무 중 다음 사무	
	가. 주민세 - 개인분 비과세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- 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사전조사 대장 정비 및 신고 관련 업무	지방세법 제7장
	나. 재산세 - 주택, 건축물, 시설물, 토지실측 현지조사 및 대장 입력 - 변동자료 정리 및 대장 입력 - 수시 부과분 입력 - 주된 상속자 지정(다만, 해당 동 부동산에 한정한다)	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
	다. 지방소득세 -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	지방세법 제8장
	라. 해당 동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	

별표 3 ② 중 민원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	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
	가.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	
	나. 변경·해제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	

별표 3 ③ 중 민원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	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	가.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, 보유 신고	
	나.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	

별표 3 ③ 중 건설도시란의 제53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란에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4	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	
	가.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검토	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
	나.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	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	다.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및 검토	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
	라.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등 보고	정보통신공사법 제7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	마. 마을방송시설의 관리	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2조, 제5조 및 제8조의2

별표 3 ④ 중 민원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	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	가.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, 보유 신고	
	나.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	

별표 3 ④ 중 건설도시란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3 ① 민원란의 제8호 및 같은 별표 ② 민원란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 개정으로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 성 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려수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관 실·과		정책기획관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정책기획관 김려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조직관리담당 유민상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 윤일형(044-300-2132)